

# 순천대학교 대과체제통합학과 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규정

제정 2020. 11. 3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의 학사구조개편으로 통합한 학과·학부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① “대과체제통합학과”는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가 통합하여 단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통합학과와 복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트랙제 통합학부 중 학무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② 이 규정은 「순천대학교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대과체제통합학과가 신설되는 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** 이 규정은 대과체제통합학과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**제4조(전공지도교수)** ①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지도 등을 위하여 통합 직전 학과(전공) 수보다 한 명이 적은 전공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전공지도교수는 학과(부)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** ① 전공이수 최소학점은 순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별표2에도 불구하고 63학점에서 78학점까지로 한다.

② 전공교과목 편성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개 학과(전공)의 통합학과 : 110학점 이내(순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13조제2항 상한학점의 121퍼센트 이내)
2. 3개 이상 학과(전공)의 통합학과 : 150학점 이내(순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13조제2항 상한학점의 165퍼센트 이내)
3. 2개 이상 학과(전공)의 트랙제 통합학부 : 164학점 이내(순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13조제2항 상한학점의 181퍼센트 이내, 트랙공통 전공필수 반영)

③ 전공교과목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합학과 :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31조 폐강기준의 80퍼센트
2. 트랙제 통합학부 :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31조 폐강기준의 90퍼센트

④ 대과체제통합학과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통합 직전 학과(전공) 수 이내로 개설 교과목을 사전 분반하여 편성할 수 있다.

⑤ 3개 이상 학과(전공)의 통합학과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동일 전공교과목을 매학기 개설할 수 있다. 1학기과 2학기에 동일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학과(부)의 동일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주당 교수시간 감면)** ① 총장은 대과체제통합학과의 전임교원이 주당 교수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당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초과강의료는 이 대학교 강의료 지급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적용한다.

1. 대과체제통합학과의 장에게는 3시간의 주당 교수시간을 감면한다.
2. 전공지도교수에게는 3시간의 주당 교수시간을 감면한다.
3. 3개 이상 학과(전공)의 통합학과 전임교원에게는 3시간의 주당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통합학과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은 대과체제통합학과 편제 완성 학년도까지 적용한다.

**제7조(교수 지원)** ① 총장은 전임교원 신규 초빙시 대과체제통합학과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대과체제통합학과의 전임교원이 주당 교수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교양교과목 강의 우선 배정
2. 연구년(해외파견, 연구교수) 교수 선정시 우선 배정

**제8조(조교 정원)** 통합 직전의 조교 정원으로 하되, 조교 정원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하며, 소속 전임교원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예산 및 공간)** ① 통합 이전 학과(전공) 수를 고려하여 각종 예산을 배정하고, 대과체제통합학과의 발전을 위해 특별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통합으로 인해 공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학생 소속 등에 관한 특례)** ① 통합 이전 학과(부)로 입학한 학생이 대과체제통합학과로 소속 변경을 희망할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과체제통합학과의 학생과 같은 학년으로만 가능하며, 대과체제통합학과의 편제가 완성되지 않아 같은 학년이 없는 경우는 소속 변경을 할 수 없다.

② 통합 이전 학과(부)에 입학한 학생이 대과체제통합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 때에는 학생의 원에 의하여 대과체제통합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11조(그 밖의 사항)**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이 규정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과체제통합학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부칙 (2020. 11. 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제2조(2021학년도 대과체제통합학과)** 2021학년도에 신설되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과체제통합학과 중 통합학과는 농생명과학과, 화학공학과로 하고, 트랙제 통합학부는 기계우주항공공학부, ICT융합공학부로 한다.